◈ 산안법 위반 사전 경고없이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

노동부는 5월부터 산안법 위반시 시정 기회없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.

◈ 2명 이상 사망한 건설현장은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대상

건설근로자가 2명 이상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가 해당 건설현장을 상대로 특별감독을 실시, 3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고용노동청이 재해발생 1개월 이내에 해당 건설업체의 전국 현장과 본사를 상대로 특별점검을 벌인다.

◈ 서비스업 안전보건기준실설

서비스업 위험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기준이 신설된다. 서비스업 사업주의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가 강화되고 서비스업 종사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무도 부여된다 사내하청 파견노동자 보호를 위해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 원청 사업주에 포괄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.

◈ 안전보건 반장제도 도입

50인 미만 사업장에 10만 안전보건지킴이(안전보건반장)을 지정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지원한다. 10만 안전복건지킴이 활동 우수업체에는 클린지원사업, 산재예방 요율제 등과 연계해 인센티브가 주어진다.

◈ 안전보건 우수기업 산재보험료 경감

산업재해보상법에 산재예방요율제가 도입된다. 고용노동부는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을 평가해 우수한 경우 산재보험료를 rudrkatlu 준느 등 보험요율를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.

◈ 산재통계 다양화

현행 요양일 기준 산업재해 통계 외에 휴업일 기준 통계를 산출한다. 현행 재해자수(재해율) 위주의 안전보건정책 성과지표는 사고성 사망자수 근로손실일수 등으로 구체화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.

◈ 진폐 노동자 진폐보상 연금 도입

지난해 11월 진폐 동자의 장해급여 등이 진폐보금으로 통합됐다. 종전에는 진폐 판정 시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합병증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진폐에 따른 요양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다.

◈ 4대 사회 보험료 징수 통합

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통합된다. 고용·산재 보험료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,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과세근로 소득으로 변경된다.